최신 판례

'헌인마을'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? [대법원 2018도19961]



■ 사안의 개요

-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알선수재) 부분의 요지¹⁾
- 피고인과 윤OO은 OOO도시개발의 회장 황 OO, 부사장 황△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'헌인마을'에서 도시개발 사업을
- 1)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특가법위반(알 선수재) 외에 사기도 있으나 사기 부분은 특 별히 문제되지 않음
-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'뉴스테이(New Stay,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)'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음
- 피고인과 윤OO은 2016. 3.~4.경 황OO, 황 △△에게 '최OO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.'며 '작업비'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

- · 피고인은 2016. 5.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 근 일명 '카페거리'에서 황△△을 만나 그곳 에 주차된 황△△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음
- 이로써 피고인은 윤OO과 공모하여 대통령 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음

◉ 소송경과

• 제1심 : 유죄(사기 포함 전부 유죄), 징역 3 년 6월, 추징 1억 5,000만 원²⁾

• 원심 : 항소기각

■ 대법원의 판단

◉ 이 부분의 쟁점

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,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가담 여부임

◉ 판결 결과

상고기각 (유죄 확정)

■ 판단 근거

피고인은 알선단계,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였고, 윤OO과의 이익 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 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

■ 판결의 의의

-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,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
-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'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'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·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 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 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, 소위 '국정농 단'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

^{2) 1}심 판결문 중 추징 부분 :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 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 징할 것이며,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(대법원 1975, 4, 22,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. 그런데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윤○○의 관 계,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.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 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윤○○에게도 이 익이 되는 점(피고인은 윤○○의 지시에 따 라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),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.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,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과 윤○○은 이 사건에서 수 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 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윤○○ 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 게 추징하기로 한다.

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확정 [대법원 2015모2229]



■ 사안의 개요

◉ 재심청구 이유

-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음
 -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. 11.
 14.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 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, 국권문란죄 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음 ➡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

- 피고인들을 연행한 경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·감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,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함

◉ 소송 경과

- 제1심: 재심개시결정
- 워심: 검사의 즉시항고 기각
- 검사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고 주장하며 재항고함

■ 대법원의 판단

● 쟁 점

- 형사소송법 제422조, 제420조 제7호 재심 사유로서 '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 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·감금하 였다'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 여부 (⇒ 검사의 재항고이유임)
-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견이 있어 위 부분도 쟁점이 되었음 (⇒ 검사 의 재항고이유는 아님)

◎ 다수의견(9명)

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므로 재 항고는 이유 없음 ⇒ 재항고 기각

- '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하여 반란가담·협조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가 내란죄,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 어 유죄판결을 받았고, 피고인들을 체포·감 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 이 불법 체포·감금하였다'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
 -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고, 형사재판에서 심증형 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 이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음(확립 된 판례임)
- 재항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 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임

- 기록에 따르면,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·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,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
-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
 -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,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, '유죄 확정판결'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
-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 되어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 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 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음
-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음
-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 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 여 위헌·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 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은 인정됨
-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함

● 제1 반대의견(2인: 대법관 조희대, 대법 관 이동원)

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⇒ 파 기환송 의견

-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 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 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, 제422조에 서 정한 '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'도 그 직 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함
-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

● 제2 반대의견(2인: 대법관 박상옥, 대법 관 이기택)

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,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음 \Rightarrow 파기환송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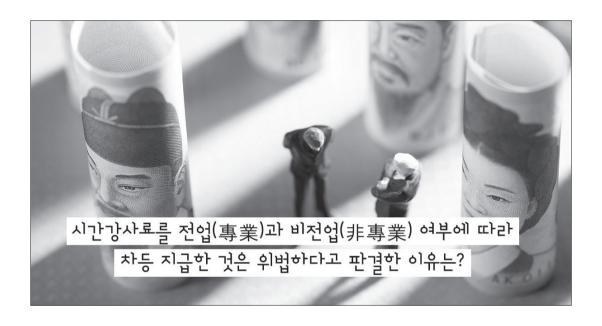
•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, 피고인들 이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

- 지 의문임.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규범적 의 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-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함. 공소사 실을 알 수 없다면 재심사유의 존부도 판단 할 수 없음.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구 제가 될 지 의문이므로 재심은 타당하지 않 음

■ 판결의 의의

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임

시간강사료를 전업(專業)과 비전업(非專業)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? [대법원 2015두46321]



■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

■ 사건 개요

- 2014. 2.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 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 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강의료 단가는 '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,000원', '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,000원'의 기준으로 하고,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'전업/비전 업 확인서'를 제출받음
-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,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

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음

- 2014. 4.경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'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'는 통보를 받 음
- 피고는 위 통보에 기초하여 비전업 시간강 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보하고, 그 이후에는 비전 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함

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

■ 제1심 및 원심 판단

- 제1심과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
-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 이라고 볼 수 없음
-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, 예산상 문제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별하여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님
- 근로계약에 이미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함
- 제1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,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

■ 대법원 판단 요지 : 원심판결 파기환송

■ 판단의 전제

- 대학의 시간강사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
-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'균등대우 원칙' (근로기준법 제6조)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'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'(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항)은 모두 헌법상 '평등 원칙'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

로 실현하기 위한 것임

 따라서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사회 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내용과 무 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 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

■ 구체적인 판단

- 전업(專業)'의 의미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국립대학교인 OO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 야 한다는 뜻인지, ②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 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, ③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 함.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 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아니함
- 사용자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 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 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
-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, 원심의 판단은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
-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 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, 이는 균등대우 원 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 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함. 나아가 피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위에 있음

■ 결 론

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, 균등대우 원칙,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것임

■ 판결의 의의

•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'균등대우 원칙'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'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'은 모두 헌법상 '평등 원칙'을 근

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 므로,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 별 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 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 시한 판결임

• 추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 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됨 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? [대법원 2014두12697]



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 지급

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?

■ 사안의 내용 및 경과

◉ 사안의 요지

- 피고는, 원고가 200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 ·부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불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, 그에 더하여 그 2배 금액을 추가로 장수하는 처분을 함
-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, 추가징수 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 부 취소함
-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

⊚ 쟁 점

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·부정이 있는 경우 추 가징수하는 금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 니면 부정수령액, 즉 거짓·부정이 있는 농지 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 임

■ 대법원의 판단

● 다수의견(10명)의 요지: 추가징수액은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됨 ⇒ 상고기각

-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 가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 정할 수는 없음
- 거짓,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 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, 침익적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· 적용하여야 하며, 그 의미가 불명 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임
-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. 당시의 입법 의도에 여러 필 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, 부 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 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 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 기 어려움
-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 지에 관하여만 거짓 · 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 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. 그런데도 또 다시 여기에 더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다면,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함

-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.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 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 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음

● 반대의견(2명)의 요지: 추가징수액은 직 불금 전액의 2배 ⇒ 파기환송 의견

-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하여 '지급한 금액'이라고 하였 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함, 다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남
-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, 즉 "직불금 부당수 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 배를 추가로 징수한다."는 것에 반함
-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 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, 직불금 전액 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,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 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 · 부정이 있 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 고 할 수는 없음

■ 판결의 의의

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 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

(위 최신판례 출처/법원사람들)